
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

교내에 있는 CCTV의 설치 ·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· 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설치 및 운영 근거

- 가.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[학교인권지원과-826(2014.1.27.)호]
- 나.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-9879(2018.7.30)[2018년시설당직원운영계획수립]
- 다. 행정안전부지역정보지원과-613(2020.2.26)호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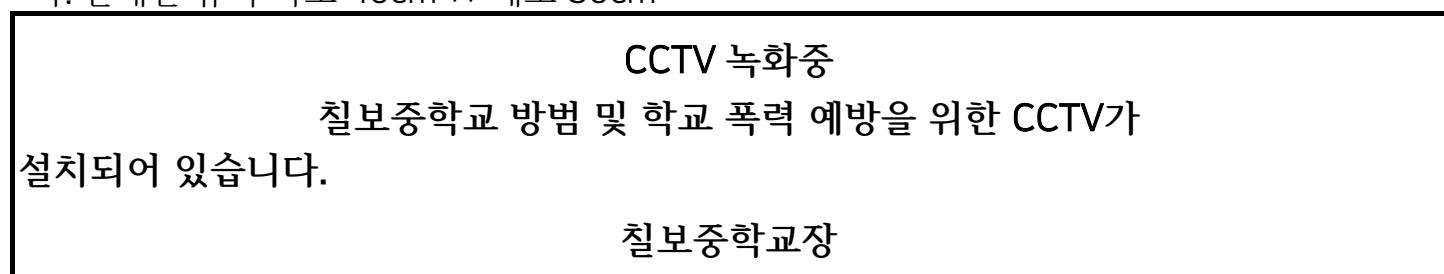
- 가. 담당부서 : 학생생활안전부 ☎ 070-8740-9208
- 나. 책임관 : 학교장 ☎ 031-291-3483
- 다. 운영담당자 : 학생생활안전부장, 안전교육담당자

4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	위치	카메라 대수	성능	촬영범위	비고
칠보중학교	3층 홈베이스	1	200만화소	30m	총13대
	4층 홈베이스	1	200만화소	50m	
	후문주차장 입구	1	200만화소	50m	
	급식실 주변	1	200만화소	50m	
	자전거 거치대	1	200만화소	50m	
	자전거 거치대 동편	1	200만화소	50m	
	5층 홈베이스	1	200만화소	50m	
	엘리베이터 내부	1	200만화소	50m	
	중앙현관	1	HD-SDI 200만화소 IR	50m	
	2층 시험지 보관실	1	HD-SDI 200만화소 IR	50m	
	정문	1	HD-SDI 200만화소 IR	50m	
	구령대	1	HD-SDI 200만화소 IR	50m	
	농구장	1	HD-SDI 200만화소 IR	50m	

5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- 가. 안내판 규격 가로 40cm X 세로 30cm



나. 부착장소 : CCTV 주변
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가.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나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

다.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
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 24시간

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영상정보 수집 후 15일

다.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 : 학생생활안전부 협의회실에 설치된 NVR 하드디스크에 저장 · 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· 운영담당자 ·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

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
8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가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: 본교 학생생활안전부 협의회실

나. 출입통제 현황 : 제한구역 지정

-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
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가. 전담 인력 지정

직	장소	시간대	연락처
학생안전 담당자	학생안전부	13:00 - 16:50	070-8740-9225

나. 운용

-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,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,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 수행

10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가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지 않습니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나.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